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2024. 4. 4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순서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소개 ..... 3
- 경과 보고 ..... 3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목록 ..... 4
- 각 정당의 공개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 및 분석 ..... 5
-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서 답변현황 ..... 11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세부내용 .. 12
- [첨부] 공개질의서 ..... 32

## ○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16개 단체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6개의 영역 범주로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제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24개의 핵심 젠더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젠더정책 과제는 총선 기간 동안 여성·성평등 의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 경과 보고

2023.3~2023.8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논의

2023.9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발표

2023.12.2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한국의희망 대상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발송  
※ 이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선거연합정당 결성(2024.2.3.)에 따라 정의당은 녹색정의당으로 기본소득당은 새진보연합으로 질의서 답변 취합

2024.2~3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에 질의서 발송  
※ 한국의희망은 개혁신당과의 합당(2024.1.24.)에 따라 이후 개혁신당에 질의서 발송하여 답변 취합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각 정당의 공개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 및 분석>

## 1.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젠더정책 과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 이에 대한 정당들의 의지 확인

○ 질의서에 답변한 6개 정당은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힘. 이에 따라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

1.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3.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5.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6.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7.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8.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9.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1.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2.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3.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5.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16.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2. 정당별 답변 현황

###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 답변

####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 나타내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4대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하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은 2023년 9월 7일 개최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를 비롯한 제22대 총선에서 젠더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함. 또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지난 3월 27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10대 정책목록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 평가에 따르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함.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제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함.

### □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지 않음.

-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음. 선거를 앞두고 주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기초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태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임.

### □ 더불어민주당, 총 24개 질의 중 19개에 “찬성”, 5개는 답변 없이 추가 의견 표명

#### ➔ 5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법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의견 제시

- 민주당은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19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5개 정책과제 질의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필요’ 등 미온적 의견을 제시함.
  -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하다고 추가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답변 내용은 민주당의 주 4일(4.5일)제를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공약과 부조화를 이룸.

▶ 임금노동시간 외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노동시간에 비해 긴데, 임금노동시간과 무급 돌봄노동 시간을 합한 1일 총 노동시간은 여성이 484.4분, 남성이 468분이지만, 무급 돌봄노동 가치는 늘 평가절하 당해왔음.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해야 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주 35시간제 도입이 필요함.

- 2)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 대해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이 있다고 답변함.

▶ 이성에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전통적 규범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 실천으로 인해 뚜렷이 약화되고 있음. 2020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약 70%가 동의한 바 있음.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 간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며, ‘정상가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더욱 강화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3)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에 대해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열악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에는 여성장애 관련 조항이 형식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의 방향을 정하기 힘들어 단독 법률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 실태가 매우 심각하나,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에 관한 독립적인 전수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교육, 고용, 성과 재생산권 및 건강, 여성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함.

- 4)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해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을 내놓음.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개정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법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11.5%로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고,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93개국 중 120위에 머물러 있음. 이번 제22대 총선 공천 결과,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으로 14.16%에 불과함. 이는 제21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

율인 19.05%보다 더 하락한 수치임.

국회의원의 81%가 남성이며, 50~60대가 85.6%를 차지하는데, 50~60대, 남성, 비장애인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장애인, 청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필요함.

- 5)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하다고 답변함.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각종 플랫폼에서 사이버 스토킹, 단톡방 내에서의 언어 성폭력, 신상정보 유포 혹은 사칭, 도용, 허위사실과 성적인 모욕을 동반하는 피해 등 지속되고 있음.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일한데, 해당 법마저도 구성요건이 ‘도달’이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성폭력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음란’개념을 활용하고 있음.

사이버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 피해를 중단시키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지만 각 법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젠더 관점에서 사건 해석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여러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됨.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관한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민주당은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 답변을 밝혔는데, 이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질의서 답변에서 양육비 이행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과제에 대해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학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등 지속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기타’ 답변을 한 것에 비해 진전된 답변을 제출한 것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에 힘쓰길 바랍.
-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지만 지난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함. 그러나 해당 과제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며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질의서 답변에서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고,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힘.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한 상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과제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젠더정책 과제 중 찬성한 19개 과제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선도적인 역할로 입법이 완수되어야 함.



□ 새로운미래,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 “찬성”, 2개는 답변 없이 추가 의견 표명

➔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 보류’, ‘상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 등 모호한 의견 제시

○ 새로운 미래는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2개의 과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해당 질의의 내용 중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지만 “상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며 모호한 의견을 제시함.

- 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의 내용 중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한다고 답변함.

▶ 한국이 1984년 비준하고 1985년 1월 26일 발효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또한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후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며, 위원회는 2018년 제8차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의회 내 낮은 여성후보 비율에 대해 우려하며 “여성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제도 의석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정당들의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별금부과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는 성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는 차별일 수 없음. 또한 여성이 특정 분야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국민은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오히려 배치되므로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2)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고 답변함.

▶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수와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기업 자율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이미 유럽 여러 나라는 기업의 자율 공시제도에 대한 효과가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한 바 있음.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포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 조국혁신당,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1개 ‘찬성’하였으나, 3개 과제는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시

- 조국혁신당은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1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을 제시함.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은 임금노동시간 외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시간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과 혐오가 계속 강화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과 차별의 사유가 교차하는 복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임(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는 현재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강간죄는 성폭력을 정조 침해의 죄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자 성폭력 처벌의 공백을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2023)에서의 권고도 있었음.

한국사회 내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음. 국회의원은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서 입법을 진행하며 국민을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음.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의 3개 과제에 대해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람.

한편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상별 포괄은 검토 필요’로 추가 의견을 밝힘.

##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서 답변현황>

(○ : 찬성 / X : 반대 / 공란 : 찬반 의견 없이 추가 의견 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답변 미제출

순서	핵심 과제	더불어 민주당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 혁신당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공란	○	○	○	○	공론화 필요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	○	○	○	○	○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	○	○	○	○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	○	○	○	공론화 필요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공란	○	○	○	○	○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	○	○	○	○	○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	○	○	○	○	○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공란	○	○	○	○	○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	○	○	○	○	○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	○	○	○	○	○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공란	○	공란	○	○	○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	○	○	○	○	○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	공란	○	○	○ *상별 포괄은 검토 필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	○	○	○	공론화 필요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	○	○	○	○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	○	○	○	○	○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공란	○	○	○	○	○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	○	○	○	○	○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	○	○	○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	○	○	○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	○	○	○	○	○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	○	○	○	○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	○	○	○	○	○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	○	○	○	○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세부내용>

핵심 젠더정책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	-------------------------

##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일의 양 조절·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일할 권리와 일하지 않을 권리를 가로지르는 문제이자, 여성에게 무급으로 요구되어온 돌봄노동의 시간을 모든 시민과 평등하게 분배하는 차원의 문제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배분’이라는 빈약한 관점 아래 논의되어왔다.
- 임금노동시간 외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노동시간에 비해 길다. 2021년 OECD 통계<sup>1)</sup>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과 무급 돌봄노동 시간을 합한 1일 총 노동시간은 여성이 484.4분(유급269.4+무급215.0), 남성은 468분(유급419.0+49.0)이다. 그러나 무급 돌봄노동 가치는 늘 평가절하당해 왔다. 장시간 임금노동으로 돌봄노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은 무급 돌봄노동을 착취하며 존재해온 장시간 노동시간의 역설을 담고 있다.
-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한다.

## 2)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핵심 젠더정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	---------------

## 1) 현황 및 문제점

-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골자다.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사회의 공정 전환'을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공정전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성 및 소수자는 보이지 않고 제시되는 정책 역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 대책에 치중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한 채로 시도되는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없다.
- 2022년 기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은 126조원으로 추정되며<sup>2)</sup>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2위, 1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로 국가나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다. 2022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한국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연간 12억원(3년간 지원 예

1) Employment :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 sex,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7>

2) “2022년 지구 강타한 '기후재난', 경제적 손실 126조원”, 프레시안, 2023.1.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213301285642>

정)으로 총 피해규모액의 약 0.001%에 불과하다.

-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근절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회용품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유예되었고 결국 같은 해 12월 세종, 제주 단 2곳에서 축소 시행되었다.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은 빈번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후재난에 따른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후위기 영향 진단과 해결 모색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CPP) 6차 평가보고서는 핵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풍력·태양광에 비해 1/1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2042)’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등 친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친원전 정책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국내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책임 이행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이행
  - COP27에서 합의된 ‘기후위기 피해와 손실 기금’ 한국정부 지원 예산 확대
  -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의 저감, 회수와 재활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적 관리 이행 및 1회용품보증금제 전국 시행
-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 기후재난 발생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적용 의무화 및 기후재난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
  - 정부/지자체에서 <기후적응대책> 수립시 성별, 지역별, 주거형태별, 기후재난 예방/피해보상 대책마련
- 노후 핵발전소 영구정지 및 재생에너지 전환
  -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중단 및 고리 2·3·4호기 영구정지

### 핵심

### 젠더정책 3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105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경제 참여·기회 부문(0.597)에서 114위, 교육 성취 부문(0.977)에서 104위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0.976)은 46위, 정치권력 분배(0.169) 부문에선 88위였다.
- 여성의 열악한 현실은 국내 지표에서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과의 격차는 19.3%(남성 참가율 72.6%)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 노동자의 47.4%로 남성(31.0%)에 비해 16.4%가 많다. 2021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383만 3천원, 여성이 247만 6천원으로 남성 대비 64.6% 밖에 되지 않고, 월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약 136만원으로, 전년(약 132만원) 대비 약 3% 증가하여 성별 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이 약 8만 2천 명(73.7%)이고 남성은 약 2만 9천 명(26.3%)이다. 2019년 맞벌이 가구 여성의 돌봄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이고, 남성은 54분으로 여성이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수는 30,105명이고, 그 중 88.6%인 26,685명이 여성이다. 또한 2020년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831건으로 2019년 대비 2,141건이나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이처럼 여성의 노동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임금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전담하는 전담부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어 국가 단위의 성평등 실현은 주류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여성가족과 등)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있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유명무실하고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 격차가 있지만 성평등 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성평등정책전문관/자문관 등은 일부 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 한편, 성평등 관련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은 현재 비상설화 되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의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단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모든 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상설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
    - 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젠더·일·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봄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집행력 강화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
    - 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 성평등 정책의 민관 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핵심**  
**젠더정책 4**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남성·이성애·비장애인’ 중심의 허구적 ‘정상성’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분리하면서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왔다. 일상과 일터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결과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이다. 배제와 차별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준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

등법) 제정이 수십 년째 미뤄진 결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직·간접 차별과 혐오는 강화·재생산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에서 가장 먼저 타격과 위협을 받았으며 이들은 보장받아 마땅한 인권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에 따른 차별과 차별의 사유가 교차하는 복합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에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2023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차별의 결과를 개인들이 감당하게 하는 부정의를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평등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sup>3)</sup>과 국민인식조사<sup>4)</sup> 결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4개의 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는 한 차례 공청회(2022.05)를 열었을 뿐 법안은 계류 중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물론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4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 한국 정부 본 심의(2023.01.26.)에서 98개 참여국 중 17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sup>5)</sup>

## 2) 정책 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b>핵심 젠더정책 5</b>	<b>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b>
----------------------	--------------------------------

### 1) 현황 및 문제점

- 이성에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전통적 규범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 실천으로 인해 뚜렷이 약화되고 있다. 2020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만3천 가구)로 2015년에 비해 27.5% 증가했다.<sup>6)</sup> 2021년 전국 비(非)친족 가구는 47만2천660가구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sup>7)</sup> 2022년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률은 65.2%로 2년 전보다 5.5% 증가했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은 34.7%였다.<sup>8)</sup> 2020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69.7%가 동의하였다.<sup>9)</sup> 동성 커플, 비혼 출산, 혈연/결혼과 무관한 상호부조 공동체 등 생계나 돌봄을 공유하는 다양한 방식이 점차 더 가시화되고 있다.
-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6조에서는 이혼 신청 시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여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가족 구성에 관해 결정할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법률명에서부터 '불건강한 가족' 개념을 상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

3) 2021년 5월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시작된 지 22일만에 10만명 동의를 채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9311.html>

4)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서 '차별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이었고, '현재 21대 국회에 4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임을 전제로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동의(67.2%)한다고 답하였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년 1월 27일 논평.<https://equalityact.kr/0127-2/>

6)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자료갱신일: 2022-07-28)

8) 통계청, 2022 사회조사

9) 여성가족부, 2020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며(제3조), 가족 ‘해체’를 ‘예방’할 노력을 개인들에게 부과한다(제9조). 이처럼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 간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한다. 또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애도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더욱 강화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성을 침해한다.

## 2) 정책과제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등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 민법 제836조의2 2항(이혼숙려제) 삭제

<b>핵심 젠더정책 6</b>	<b>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b>
----------------------	------------------------

## 1) 현황 및 문제점

-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양육자 등은 이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이 책임이 있는 양육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sup>10)</sup>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에 이르며, 한국의 한부모가정 아동 빈곤율은 무려 47.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한부모 외 가정의 아동 빈곤율과의 격차는 37%p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sup>11)</sup>로 그 격차가 크다.
- 소송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해결하도록 만든 현행 구조<sup>12)</sup>는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어렵게 한다. 홀로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는 양육자가 기나긴 소송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고통을 가중시키며, 소송을 하더라도 ‘감치명령’ 제도<sup>13)</sup>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양육비 이행 조치가 이처럼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sup>14)</sup>의 미도입과 관련이 있다. 이는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아동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양육비 이행조치를 통해 차후 양육비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독일, 스웨덴, 핀란드 모두 간단한 신청만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직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sup>15)</sup>.

## 2) 정책과제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1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child>

11) 허민숙,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국회입법조사처, 2023.5.10.

12)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징수하는 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모두,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을 요한다.(출처: 각주 11)

13)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인उन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처벌 모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 우편송달 회피 방법으로 감치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채무자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출처: 각주 11)

14)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

15) 출처 각주 11과 동일.



1)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12월 기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324,559명(남녀 모두 포함) 중 귀화하지 않은 상태로(비자 자격)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169,633명으로 총 52%이다<sup>16)</sup>.
- 2022년 F6(결혼이민)비자의 미등록(‘불법체류’) 신규 발생 인원은 1,136명, 2021년 1,204명으로 결혼비자에서 1년에 천명 이상의 미등록 체류가 발생한다<sup>17)</sup>. 이는 결혼비자의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인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혼이민비자 취득 가능 여부 및 귀화(혼인간이귀화) 절차도 배우자 및 자녀 유무, 사별·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별·이혼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귀화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복수국적 취득 기회가 차단된다. 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생계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자녀 출산과 양육, 배우자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연장 및 귀화 절차가 다른 점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정책화한 것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 사망·이혼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차별이다. 또한 긴 혼인귀화 심사 기간(2022년 2월 기준 약 18개월)은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이다.

결혼이민(F-6) 비자 분류<sup>18)</sup>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한국민과 혼인신고”하고 임신 또는 미성년자 자녀 등과 동거하는 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로 한정한다<sup>19)</sup>. 따라서 한국민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민, 남편이 사망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 자녀가 성년이 되는 한부모 결혼이주민, 한국인의 미성년 혼인외자를 양육하고 있으나 한국민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공공부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보장시설은 여성복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수급권자가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2년 12월)”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22년 12월, 2021년 12월)”

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외국인 체류안내 매뉴얼”

19) 공적부조와 대상이주민 (2019년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분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동거 중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 또는 사별했으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 임신 중 ○ 난민인정자
긴급복지지원제도	○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한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한국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본인 귀책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아니면 수급 지원이 제한되어 입소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0)</sup>.

## 2) 정책과제

- 결혼이주민의 시민권으로써의 체류 안정성 보장
  -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와 다름없는 과도한 귀화 자격요건 완화
  - 귀화 심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주민의 범위 확대
  -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유무,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
  - 한국인의 혼인외자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이주여성(F-6 또는 F-1)이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 개정
  - 사회보장시설(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이주민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명문화

### 핵심 젠더정책 8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열악한 상황이다.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이 전체의 55.6%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up>21)</sup>, 저학력은 여성장애인이 모든 권리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조항뿐이며, 여성장애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뿐이다.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의 방향을 정하기 힘들어 단독 법률이 필요하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도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22)</sup>
- 장애인을 결핍된 몸으로 바라보고 일상과 일터에서 배제하여 관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라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형태는 성폭력, 불법적 불임시술 등으로 이는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관리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에 관한 독립적인 전수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교육, 고용, 성과 재생산권 및 건강, 여성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20) <사례> 이후 후 국민의 자녀를 양육한 A는 영주자격자(F-5)로 지병 등으로 현재 수급권자임. 아이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됨. A는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수급권 자격이 상실될 경우 생계유지 등에 대해 염려함. / 국민의 혼인외자를 양육하고 있는 C는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시책 등에서 모두 제외됨.

21) “여성장애인 절반 이상이 ‘초등학력 이하’”, 경향신문, 2018.10.02.,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810021610001#c2b>

22)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전대신문, 2023.03.02., <http://press.cnu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9>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및 정책 추진
  - 실태조사에 여성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한 전수 조사 포함
  - 교육, 고용, 성과 재생산권, 건강, 여성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b>핵심 젠더정책 9</b>	<b>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b>
----------------------	----------------------------------

###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자체까지 실질적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sup>23)</sup>
-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농업인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농업의 주체인 여성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 총 181만1377명,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 : 53만9,233명(29.8%)<sup>24)</sup>
- 모든 현행법과 제도는 농민 대신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를 농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행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로 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정책대상 또한 농가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대신 농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여성농민을 동등한 농민으로 인정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등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 명시
- 공동경영주 지위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영주/공동경영주 구분 없이 농업종사자로 등록하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농민기본법 제정

<b>핵심 젠더정책 10</b>	<b>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b>
-----------------------	---

### 1) 현황 및 문제점

- 통일부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민 수는 약 3만4천여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은 71.9%로 절대 다수이다<sup>25)</sup>.

23)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아오던 부서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 2019년 6월 농촌여성정책팀 전담부서 신설

24)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포털 2022년 등록현황 조회

2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현황”, 검색일: 2023.8.3.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와 남한 정착 후 가족 재구성 등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을 지닌다. 북한이탈여성의 남편 출신지는 북한, 남한, 중국, 그리고 중국 출신 중에서도 한족, 조선족 등으로 다양하며, 자녀를 갖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많은 경우 출신지가 다른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을 구성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서로 다른 가족문화의 배경 속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 자녀 간 갈등, 자녀의 사회부적응 문제, 가정폭력 및 이혼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지원에 있어서 탈북과정의 심리적 외상치료와 더불어, 젠더 관점의 가족관계 개선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 2) 정책과제

- 지역 주민센터 혹은 북한이탈여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내 상담기관 선정
- 젠더 및 민주시민 관점을 가진 북한이탈민 맞춤형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상시 운영, 관련 전문상담가 육성/배치

### 핵심 젠더정책 11

##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세계 각국의 성평등 상황을 교육·건강·경제·정치 등 부문별 여성과 남성 격차를 지수로 환산해 순위를 발표하는데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권력 분배(0.169) 부문에서 88위, ‘의회 여성 비율’은 0.304를 기록하여 84위에 그쳤다.
- 현재 여성국회의원은 300중 57명으로 19%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수준은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sup>26)</sup>이고, 국제의회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3개국 중 120위(2023년 1월 기준<sup>27)</sup>)에 머물러있다.
- 지난 제21대 총선 공천결과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는 213명, 남성 후보자는 905명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은 19.05%에 불과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 정의당 20.78%였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남녀동등 참여(여성 할당 50%)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구 공천에서 30% 여성할당은 여전히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성별, 연령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의 81%가 남성이고, 50~60대로 85.6%를 차지한다. 50~60대, 남성, 비장애인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청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기탁금 비용 축소,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계산 방식 개혁

26) 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27) e-나라지표,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노동관계법은 상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시절 만들어졌다. 지금은 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 아닌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수는 220만9,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709만명(2018년 10월 기준)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여성 특수고용 종사자는 57.1%로 남성(42.9%)보다 더 많았다<sup>28</sup>.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46만9천~53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며 남성이 66.7%로, 여성(33.3%)의 2배였다. 남성은 대리운전(26.0%)이 가장 많았고, 화물 운송(15.6%), 택시 운전(8.9%)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음식점 보조·서빙(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의료(14.0%) 순이었다<sup>29</sup>. 정확한 규모조차 집계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합산하면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 이들이 어떠한 노동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불확실한 고용관계와 저임금, 사회적 보호에서 이탈된 상태라고 정의<sup>30</sup>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6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자 정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법의 변화는 더디다.
- 통계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개의 65.76%에 달한다. 노동자 수는 503만명으로 15.2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다. 해고 및 주 12시간 연장 한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가산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예외다. 이런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실제적 불이익,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오지만 사용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사용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해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은 방법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셈이다.
- 기업들은 특히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선호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4대 보험, 무기계약 전환 간주,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14.5시간 계약을 만들어 이를 비용 절감의 도구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악조건을 이용한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돌봄, 노인일자리, 서비스직 중심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38만 6천 명(210.2%)이 증가했고, 여성은 71만 9천 명(284.6%)이 증가했다. 또한, 같은 시기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했고, 여성이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sup>31</sup>.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단시간 노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공간은 자연스레 여성의 것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지만 성차별로 인지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차별과 배제의 근거조항들을 삭제하는 것뿐이다.

## 2) 정책과제

-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
  - 노동자 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에서의 노동자 정의를 변화시켜 일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포괄할 수

28) 정홍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2019

29)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46만9천~53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2019.6.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6294.html#csidxfcdc67e5444d323b7867d26fa588e24>

30) 박나라·김교성,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법적 지위 규정 방안’, 11쪽, 2021

3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취업자(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 모두 포함)

- 있도록,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노동자’라고 추정하고 이를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입증 책임을 부담<sup>32)</sup>
- 노동자성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전담기구 설치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보장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위장 분할 사업장 처벌규정 신설
- 초단시간 노동자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조항 삭제
  - 기간제법 시행령 중 2년 이상 노동자 상시고용 의무에 제외되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배제 조항 삭제

<b>핵심 젠더정책 13</b>	<b>성평등 공시제 법제화</b>
-----------------------	--------------------

### 1) 현황 및 문제점

- 성평등 공시제는 기업 내 성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개 내용에는 임금을 포함하여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의 성별 소요연한, 고용형태별 성비, 직군별 성비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유럽 등지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하면 정보공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젠더관점의 분석과 판단, 개선 방안 제출 및 실행, 평가까지를 포괄한 전 과정을 일컫는다.
-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성평등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로서 규정된 것으로 노동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접고용(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간접고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 등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 수 및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sup>33)</sup>이다. 우려점은 기업 자율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는 기업의 자율 공시에 맡겨 효과가 없어 강제조항으로 전환하였다.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포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sup>34)</sup>. 이러한 기업별 정보들은 하나의 온라인 공간으로 집적하여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가공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구축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공시를 위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 또한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에는 공시 이후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비어 있다. 성평등 공시제는 공시만으로 끝나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공시 과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내부의 성별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실행토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의 효과를 점검하여 상별로 규율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2) 박귀천, ‘근로자 개념의 판단-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워크숍 자료, 31쪽, 2021

33) 성별근로공시제는 시작...“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경향신문, 2023.3.23.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3230550051#c2b>

34) 전윤정, ‘성별임금격차현황과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성평등을 향한 여정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53쪽, 2023

## 2) 정책과제

### ○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임금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 공개 및 젠더관점에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에 대한 평가, 상벌까지를 포괄
- 성평등 공시제는 기업의 자율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도입
-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별도 사이트 구축
- 기업 스스로 성별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실행토록하고 이에 따른 상벌을 제도화

핵심  
젠더정책 14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집계(2022)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강간은 전체 강간상당의 62.5%였다.<sup>35)</sup> 지속적인 학대나 위협이 있었거나, 고립된 장소에서 가해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려워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 술이나 잠에 취한 상태를 이용, 피해자 속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사실상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을 요구한다. 이는 성폭력을 정조 침해의 죄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며 성폭력 처벌의 공백을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어렵게 한다.
-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일본은 ‘강제성교죄’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개정하여 강간죄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통과·시행되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8년 한국에 강간죄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2023년 UN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강간죄 개정권고 이행에 대한 회원국 권고도 있었다.
-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후에 ‘강간죄개정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무고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으나 성폭력 무고건이 0.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집계(2022)에 따른 ‘폭행협박이 있었으나 강간 신고·고소된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폭행 협박 입증되지 않음’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의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비율은 강간 사건의 폭행 협박 입증 여부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저항유무, 사건 이후 ‘피가해자 관계’, ‘피해자다움’으로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성폭력 관련 법이 많아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으나 준강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장애인 항거불능 성폭력 또한 유형력과 저항유무 판단, 피해자다움에 영향받고 있어 성폭력 판단기준 변화가 시급하다.

## 2) 정책과제

###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35) 나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1대 국회 토론회’ 발제문, ‘강간죄’개정 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외 국회의원 6인,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36) 김정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공동포럼’발제문, 대검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1)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제대로 격리되거나 처벌받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로 명시되어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 사법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중 2.3%만이 경찰에 신고한다.<sup>37)</sup> 신고하더라도 입건되는 비율은 2021년 21%에 불과했다(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건수는 46,041건).<sup>38)</sup> 같은 해 신고 건수 대비 기소율은 7.4%<sup>39)</sup>로 매우 낮다. 대신 가정폭력 사건은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검거인원의 54%).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1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인원은 19,321명이었으며, 이 중 약 44.5%(8,603명)는 불처분되었고,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4.8% 4,803명)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1.4%, 2,208명) 위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제한은 0.1%(33명)에 불과했고 친권행사 제한 및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상 신고 되지 않고, 형사처벌되지 않고 있다.

### 2) 정책과제

-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제대로 격리되거나 처벌받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로 명시되어 법 전반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 사법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중 2.3%만이 경찰에 신고한다.<sup>40)</sup> 신고하더라도 입건되는 비율은 2021년 21%에 불과했다(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건수는 46,041건).<sup>41)</sup> 같은 해 신고 건수 대비 기소율은 7.4%<sup>42)</sup>로 매우 낮다. 대신 가정폭력 사건은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검거인원의 54%).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1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인원은 19,321명이었으며, 이 중 약 44.5%(8,603명)는 불처분되었고,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4.8% 4,803명)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1.4%, 2,208명) 위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제한은 0.1%(33명)에 불과했고 친권행사 제한 및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상 신고 되지 않고, 형사처벌되지 않고 있다.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법 집행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 또

37)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0.  
 38) 권인숙 의원실, ‘2022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2.09.  
 39) 권인숙 의원실, ‘2022년 법무부 제출자료’, 2022.09.  
 40)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20.  
 41) 권인숙 의원실, ‘2022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2.09.  
 42) 권인숙 의원실, ‘2022년 법무부 제출자료’, 2022.09.



는 집행유예 처분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sup>43)44)</sup> 성매수 행위 역시 거의 처벌되지 않는데,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존스쿨’ 16시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 특히 성매매 알선 범죄는 처벌 형량에 비해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알선업자들이 법을 겁내지 않고 범죄를 반복한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알선사이트 개설,<sup>45)</sup> 오픈채팅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 성매수자 DB구축<sup>46)</sup> 등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범망을 피해 성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추징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 또한 변화하고 확장되는 성매매 업소에는 더욱 취약하고 열악한 조건에 놓인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E6-2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sup>47)</sup> 또한 선불금 및 채무를 빌미로 한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성매매 강요의 과정에 불법촬영과 협박이 수반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를 구분하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한다. 업주에 의한 착취, 성매수자에 의한 폭력, 불법촬영과 같은 피해가 있어도 성매매 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있음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다.
- 한국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을 새로 마련했지만 처벌 내용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죄는 전혀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2) 정책과제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현실화
- 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 강화, 이를 위한 전담 수사기관 신설
-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필요
  - 현재의 면책특권방식으로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식별 및 인신매매 처벌법 제정

### 핵심 젠더정책 17

##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관한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 1) 현황 및 문제점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가 계속되고 있다. 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각종 플랫폼에서 사이버 스토킹, 단톡방 내에서의 언어 성폭력,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칭, 도

43)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 형량, 75%가 벌금·집행유예” 한국일보, 2019.1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722354018>

44) “1200명에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대전일보, 2023.2.7.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121>,  
 “성매매 7600회 알선 4억 챙긴 20대 포주... 법행정+초범=집유” 머니투데이, 2023.3.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809454720661>

45) “다시 등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상), ‘밤의 전쟁’ 폐쇄 1년도 안돼 재개설” 전북일보, 2020.4.7.  
<https://www.jjan.kr/article/20200407707088>

46) “성매수자 DB 8만건, 이미 800명 입건... ‘두 팔 걷어붙인 경찰’” 경인일보, 2021.12.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03010000495>

47) “오피스텔서 외국인 여성 상대 성매매 알선한 일당 7명 검거” 뉴스핌, 2023.5.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25000152>

“외국인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 제주일보, 2023.4.10.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989>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일당 구속... 범죄수익 4억원 몰수” 경기신문, 2022.5.24.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3003>

용, 허위사실과 성적인 모욕을 동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상담통계에서는 피해 유형에서 ‘기타’와 ‘성적 괴롭힘’으로 집계되는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22년 상담통계에서는 ‘기타’와 ‘성적 괴롭힘’이 각각 20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법촬영’이 19퍼센트였다.<sup>48)</sup> 그나마 이러한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이 ‘도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성폭력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음란’ 개념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해 중단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2호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게 되나 각각의 법과 방법이 한계가 있음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사건 해석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sup>49)</sup>

## 2) 정책과제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도달’에서 확대하고, ‘음란’ 기준을 걷어내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등 입법 촉구

### 핵심 젠더정책 18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 1) 현황 및 문제점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2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최대 기한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sup>50)</sup> 재신청을 놓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혼, 형사 등의 소송 기간과 가해자의 추적이 수년간 지속되는 사례 등을 볼 때,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다. 이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최대 기한을 피해자가 필요로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스토킹 역시 접근금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용 가능한 기간은 최장 9개월로 매우 짧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주로 배우자, 애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지속, 반복되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빠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속히 파·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구속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 5호와 잠정조치 4호가 있다. 그러나 2020년 경찰의 전체 임시조치 신청 건수(4,003건) 중 임시조치 5호 신청 건수는 24건<sup>51)</sup>으로 0.5%에 불과했다. 스토킹 역시 2021년

48) 2022년 한 해 동안 피해경험자 65명과 782회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피해 유형은 기타 20%, 성적 괴롭힘(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 등) 20%, 불법촬영 19%, 비동의유포 12%, 유포협박 9%, 불안피해 7%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미확인 26%, 30대 18%, 10대 11% 등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22 상담통계」, 2023(미간행).

49) 신성연이,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사이버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대 폭력 대응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63~64쪽, 2023

50)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및 제2항.

51) 정춘숙 의원실, ‘2021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1.09.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청된 잠정조치 4호 건수는 486건, 인용 건수는 210건에 불과하다.<sup>52)</sup> 추가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수사·사법기관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항 5호 적극적 집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적극적 집행

<b>핵심 젠더정책 19</b>	<b>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b>
-----------------------	--

### 1)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생존 미군위안부들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sup>53)</sup>이 ▲국가가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성매매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 행위를 하여 미군 위안부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한 점, ▲미군위안부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해당 소송은 생존 미군위안부 당사자들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조치 없으며 국가 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하지 않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는 모두 동일한 문제이며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지금도 기지촌에서는 인신매매와 폭력 범죄피해, 성 착취가 지속되고 있다. 미군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이 후대의 여성과 아동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군대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낱알이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의 기지촌 성매매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포괄하지 못해 ‘국가와 군대에 의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성매매 등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정책과제

- ‘군 주둔지역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군 주둔지역 성 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국가 범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확대

<b>핵심 젠더정책 20</b>	<b>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b>
-----------------------	---

### 1)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으로, 세계사에

52) “스토킹 신고해도 구속 2.7%뿐...‘잠정조치 4호’ 절반이 기각”, 중앙일보, 2022.09.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787>

53) 대법원 민사2부의 2018다224408(국) 판결문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다.

-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1992년 1월부터 31년간 변함없이 수요시위를 개최,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시위는 미래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세계 시민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 그러나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고,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공격을 함으로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sup>54)</sup> 타인의 인격을 폄훼할 자유,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다. 가해국이 사죄는커녕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 역사부정세력들은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태는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하고 있다.<sup>55)</sup> 2023년 기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로 가족들 역시 고령이라 직접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바로잡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존 형법상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 2) 정책과제

-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사실 부정을 금지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

### 핵심 젠더정책 21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 1) 현황 및 문제점

-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생계 및 삶 전반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분석 결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sup>56)</sup>가 32.53%로 나타났는데, 특히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sup>57)</sup> 가처분소득 기준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6%로 남성가구주 가구(12.1%)보다 3배 가까이 높다.<sup>58)</sup>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과 경쟁을 통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하나, 2022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임대 제외) 비율은 5.8%에 불과하다.<sup>59)</sup>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4.5%이다.<sup>60)</sup>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정책이 여전히 이성애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또한, 혼인·혈연·입양으로

54) “거리를 뒤덮은 혐오,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사람들 〈주간 뉴스타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HhWCJk8zo>

55) “소녀상 둘러싼 극우들...‘위안부 부정’ 모욕 쏟아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겨레, 2022.1.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998.html?\\_ga=2.20411064.1830511376.1692321457-1562109039.1655114029](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998.html?_ga=2.20411064.1830511376.1692321457-1562109039.1655114029)

56)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법을 활용하여 잔여소득 < 최저생계비 중 비주거 지출비율(=적정비주거 소비지출)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정의

57) 조정희, 박미선. 2022. 주거비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세종: 국토연구원

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빈곤통계연보’

59)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023>

60) 국토연구원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이루어진 ‘법적가족’만이 공공임대주택 공동거주, 주거 대출 지원 등 제도를 이용 가능한 실정이다.

- 고용 형태 역시 주거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소득이 있어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출제도 이용이 막혀 있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을 대출받을 수 있다. 3.3%의 원천징수된 소득을 증빙해도 이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정한 주거공간에 살 수 있는 권리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에 따라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 한편 2023년 올해는 주거정책의 허점으로 인한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빠져있으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되지 않는 등 특별법이 내포한 한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적자금지원 확대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 공공매입 의무화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와 법적 강제력 부여
- 동거가족 및 생활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자금 대출 등에 있어 현행 ‘법적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택 건설 및 배분 등 정책에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의 요구 반영
-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전세·집 담보 대출 보장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 피해보증금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후 소급적용, 전국규모의 피해 실태 조사,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5억원 초과 보증금, 입주 전 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개선,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정의에 ‘강통전세 피해자’ 추가

핵심  
젠더정책 22

##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자로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결정의 요지는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제도는 여전히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같은 시술인데도 피임이 목적이 아닌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피임을 목적으로 한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으로 2004년 12월부터 피임시술을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sup>61)</sup>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도 여전히 요원하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sup>62)</sup>에 따르면, 임신중지 수술을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의 임신중지 사례(5만여건 중 3200여건)<sup>63)</sup>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의료비용은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임신중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거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 유산유도제는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95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WHO가 필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지만,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유산유도제가 온라인을 통

61) “건강보험이 판단하는 ‘보호받을 자격’, 그 틈새에 차별이 보인다” 시사IN.2021.10.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22>

62) 김동식·동계연·김새롬,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6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2021

해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약물의 품질이나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유산유도제 허가신청이 시간을 끌다가 철회되었을 뿐, 국회와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약 2,000여명의 시민들과 약사, 의사들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및 필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다.<sup>64)</sup> 진정서 제출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여성 시민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겼음에도 식약처는 유관부서 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 2) 정책과제

-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피임 및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 유산유도제 필수약품 지정 및 도입

### 핵심

#### 젠더정책 23

###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6000억 원 규모의 수신료가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수신료의 축소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 여당, 야당이 추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해온 것인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상정됐으나,<sup>65)</sup>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2) 정책과제

-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미디어 공공성 확보 정책을 위한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 핵심

#### 젠더정책 24

###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에 발행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대화와 협력을 약속한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정상간 공동선언 포함)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구축했다.
- 2022년 한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56일 진행되었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대잠수함훈련 등)도 동해 공해와 제주도 이남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6위(핵무기 제외), 군사비 지출은 세계 9위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핵전쟁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24년부터

64) “낙태죄 폐지 4년, 아직도 ‘임신중단약’은 불법... “안전한 임신중지 지금 당장””.여성신문. 2023.06.26

65)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 미디어스, 2023.4.27.

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정례화·다양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2018년 8월 18일 진행된 한중일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의 위기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 정부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담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주요목차에서 윤석열 정부는 목차 제목에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통일교육의 기초가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sup>66)</sup> 한반도 종전과 평화 실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은 통일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2) 정책과제

- 대북 접촉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서술한 부분 폐기
- 역대 남북정상선언<sup>67)</sup>과 공동선언 및 합의서<sup>68)</sup> 이행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 추진
- 한미일 협력의 수준이 군사동맹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균형적 국방·외교 정책 실시
- 공교육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평화 지향적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

66) “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 ‘평화’ 빼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경향신문. 2023.03.14.

67)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68)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18년 9.19. 군사분야합의서 등

[첨부] 공개질의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공개질의서

- 정당명 : ○ 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핵심과제>

예 아니오

1. 돌봄권 확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에 찬성하십니까?
2. 기후재난 발생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적용 의무화 및 기후재난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 등을 포함한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에 찬성하십니까?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4.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가족 형태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등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민법」 제836조의2 2항(이혼숙려제) 삭제,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6.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7. 한국인 배우자 유무, 자녀출산과 양육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8.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및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고용, 성과 재생산권, 건강, 여성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9. 「여성농업인육성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대신 농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여성농민을 동등한 농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젠더 및 민주시민 관점의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11.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12.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자 범위를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노동 관련 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에 찬성하십니까?
13. 임금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 공개 및 젠더관점에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에 대한 평가, 상별까지를 포괄하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
14.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5.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6.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현실화, 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 강화, 이를 위한 전담 수사기관 신설,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등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도달’에서 확대하고, ‘음란’ 기준을 걷어내는 방향으로의 개정 및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입법 등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8.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항 5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적극적 집행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에 찬성하십니까?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미군위안부 관련 국가 범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확대 등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사실 부정을 금지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1.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적자금지원 확대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 공공매입 의무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와 법적 강제력 부여, 동거가족 및 생활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자금 대출 등에 있어 현행 ‘법적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택 건설 및 배분 등 정책에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의 요구 반영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에 찬성하십니까?
22.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피임 및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필수약품 지정 및 도입 등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23.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24. 역대 남북정상선언과 공동선언 및 합의서 이행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